

2020 운영상황 보고서

[도민 권익보호 신뢰받는 강원도]



2020 운영상황 보고서

도민 권익보호
신뢰받는 강원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The Ombudsman of Gangwon Province

발간사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 보지 못했던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통감하고 그리워하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달이 흘렀습니다.

해묵은 과제가 여전히 주변을 맴도는 바람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도민 여러분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도 예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도민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 9월 출범 이후로 오늘까지 도민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각종 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복합·고충민원들은 사실조사, 현장확인, 대면조사와 같은 사전 조사를 거쳐 매월 개최되는 정례회에 상정됩니다. 2020년 한 해에 다루어진 민원이 40건이고, 지금까지 처리된 복합·고충민원은 모두 266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 여러분의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해드리기 위해 매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민원



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같은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견실한 협업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는 2020년의 운영 내역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도민 여러분 앞에 내어 놓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고충 민원에 대한 분석과 함께 행정제도 개선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 고충민원 예방과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민원 사례, 위원회의 홍보 활동과 운영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해마다 운영상황 보고서를 펴내면서 우리 위원회의 노력으로 행정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또 도민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사항이 제대로 반영, 해소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의 밀도 있는 소통 기회를 늘려가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과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강원도’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원동

Contents

01

위원회 개관

- I 도입배경 8
- II 주요연혁 9

02

구성 및 운영

- I 위원회 구성 12
 - 1. 위원회 조직 현황 12
 - 2. 위원의 위촉과 구성 13
 -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14
-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5
 - 1. 관할 15
 -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15
 -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17
-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19
 - 1. 고충민원의 정의 19
 -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20
 -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23
 -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24
 - 5. 고충민원 처리절차 25
 - (참고) 민원 신청방법 26

03

위원회 운영성과

- I 고충민원 처리현황 30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30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 2.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34
 - 3.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39
 - 〈참고〉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목록 42

II 2020년 위원회 활동 모습	44
1. 민원 현장조사	44
2. 정례회 개최	46
3. 이동신문고 운영	48
4. 위원 변동사항 및 교육활동	50
5.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53
III 위원회 운영 성과(2012~2020년)	59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59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60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61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62
<참고 1> 연도별 위원회 주요 활동(2012~2019)	63
<참고 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2013~2019)	77

04

2020년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1. 태양광발전허가 기간연장 관련	81
2.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84
3.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92
4.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101
5.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105

05

참고자료

1. 조례	120
2. 시행규칙(별지 포함)	126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55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5

01

위원회 개관





I 도입배경

II 주요연혁

I 도입배경

- 강원도는 풍부한 산림·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많은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또한, 강원도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지리적·지역적 특성들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호, 군사시설 보호와 같은 각종 규제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강원도의 발전과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각종 체육시설 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등 강원도 내 도로·건설·관광·체육 시설 등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공공 행정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도내 주요정책 추진 여건'도 급변하고 있다. 법령과 제도는 물론 공공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반영이 증가함에 따라, 고충민원과 갈등사례들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한층 복잡해지는 추세다.
- 이에 따라, 강원도는 행정기관과 도민(민원 신청인) 사이에 분쟁을 조정·중재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2년에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옴부즈만(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구)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도민(민원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민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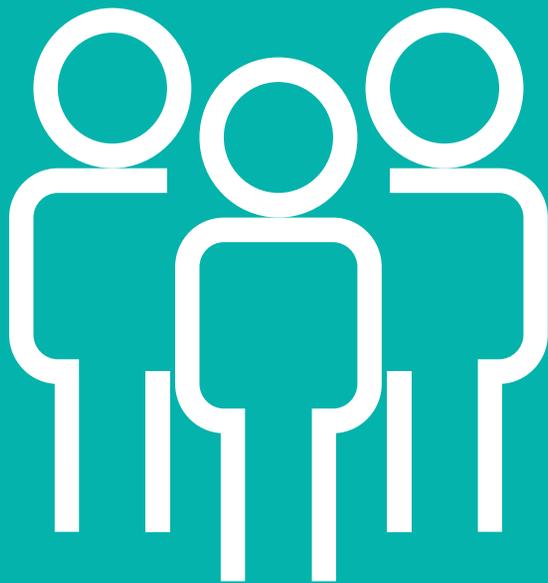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II 주요연혁

연도	주요내용	
2012년	7. 5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의원발의)
	8. 3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9. 26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9명)
	10. 4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10. 18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2013년	2. 27	제5회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분야 수상
	4. 22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
	6. 27	국민권익위 주관, 강원도 고충처리처 운영사례 발표
	7. 16	아시아옴부즈만 회장 겸 태국 국가옴부즈만 방문
2014년	2. 27	제6회 국민신문고 대상 국무총리 표창(기관)
	7. 1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회원 가입(임시지위 획득)
	11. 24	'갈등조정 전문가 및 민원 관계관 포럼' 개최
2015년	9. 17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도·시군 관계관 워크숍
	10. 8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
	11. 25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정회원(최종 승인) 가입 2017년(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유치
2016년	6. 20	도민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통장연합회)
	9. 7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이·통장한마음대회)
	10. 17	제2기 옴부즈만(민간위원) 위촉
	11. 25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 가입
	12. 19	중소기업 관련 고충해결을 위한 업무협약(도 경제진흥원)
2017년	3.29~31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동해시, 양양군, 춘천시)
	5.16~19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7. 4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
2018년	1. 15	지적·측량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7. 16	법률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시지부)
	10. 17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화천, 유관기관 합동)
2019년	4.25~26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삼척, 정선 / 권익위원회 합동)
	7.4~5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화천, 원주 / 권익위원회 합동)
	6. 17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김원동) 선출
	10. 18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속초, 유관기관 합동)
2020년	10. 21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근로복지공단 춘천시사)
	5. 22	위원회 신규위원 위촉(2명)
	5~6월	비대면 차량활용 위원회 홍보 (도내 전통시장 중심)
	8.19~21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개최(홍천, 태백, 영월 / 권익위원회 합동)
	10.29	위원회 신규위원(3명) 및 연임위원 위촉(2명)

02

구성 및 운영



I 위원회 구성

1. 위원회 조직 현황
2. 위원의 위촉과 구성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 관할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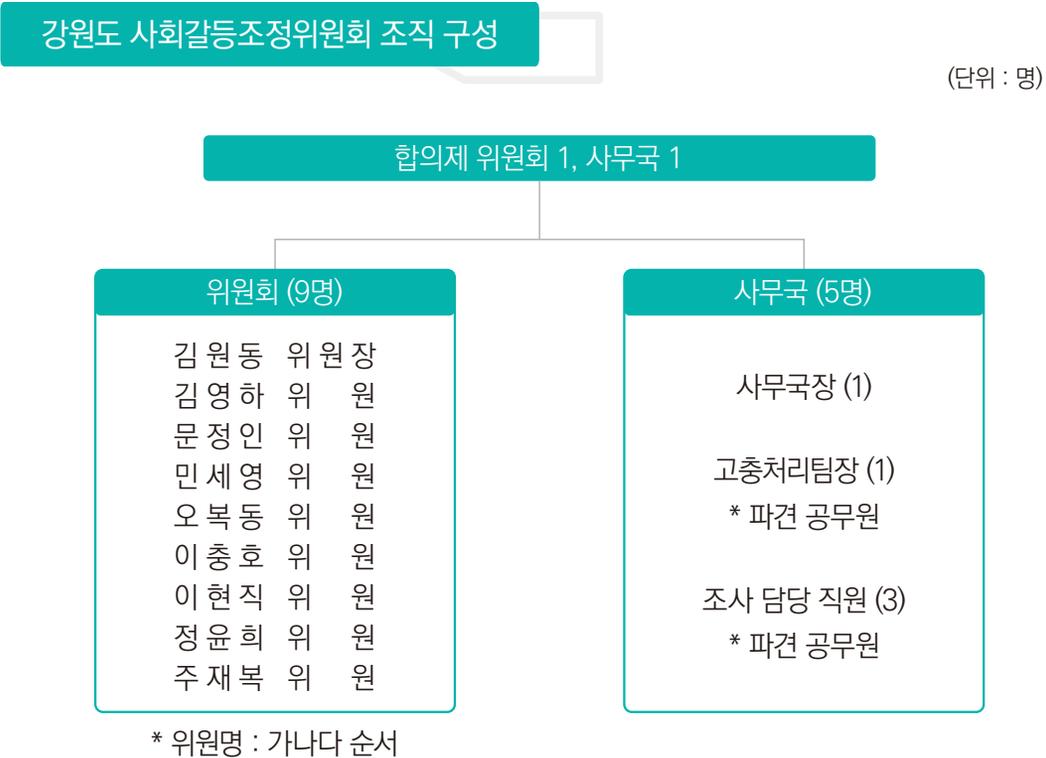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의 정의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5. 고충민원 처리절차
(참고) 민원 신청방법

I 위원회 구성

1. 위원회 조직 현황(사무국 포함)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의회 및 집행기관과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조례 제5조)되어 있으며, 현재 9명의 위원이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어 위원회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강원도 소속 공무원 4명이 파견되어 민원 조사 및 기타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구분	합 계	위 원	사무국 직원					
			소 계	사무국장	팀장	6급	7급	8·9급
현원(명)	14	9	5	1	1	1	1	1

2. 위원회 위촉과 구성

-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조례 제5조 규정)이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원조정 및 갈등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명을 선별하고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위원은 강원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결원되어 후임으로 위촉하는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우리 위원회는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강원도 지역 거주 위원과 타 지역 거주 위원을 고르게 안배하고, 활동 분야 또한 고충민원 관련 공직자·학계·시민 사회단체·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 2020년에는 총 9명의 위원 중 위원 7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5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2명의 위원을 연임 위촉하였다.

임기만료 위원			2020년 위촉사항		
만료일자	위원명	위촉구분	위촉일자	위원명	위촉구분
'20. 4.22.	노승만, 김승희	연임	'20. 5.22.	김영하, 정윤희	신규
'20.10.28.	박세기, 심준섭, 이해승	연임	'20.10.29.	이충호, 이현직, 주재복	신규
	문정인, 오복동	신규	'20.10.29.	문정인, 오복동	연임

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2020년 12월 기준)

구분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김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 現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위원	 김영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회장 • 現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
위원	 문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건축학 박사 • 現 가톨릭관동대 건축학부 교수
위원	 민세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대한법률구조공단(2016) • 現 변호사 민세영 법률사무소
위원	 오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천·화천·강릉·춘천지사장 • 現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시니어 경기본부장
위원	 이충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장 • 前 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위원	 이현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석·박사(측량 및 GIS) • 現 상지대 스마트건설공학과 교수
위원	 정윤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박사 • 現 강원연구원(사회환경연구실)
위원	 주재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 現 한국갈등학회 회장

※ 위원명 : 가나다 순

II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 관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강원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며, 법령에 따라 강원도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기관 및 개인까지도 포함한다.

조례 제4조(관할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2. 위원회의 주요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민원(고충민원 및 다수인민원)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민원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불합리한 제도·정책 등에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제도와 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다수인민원 및 사회갈등의 원만한 해결

- 다수인과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안,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등의 주요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기능 이외에도 일반민원에 대한 각종 문의내역을 상담하고 지원,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사무국 직원이 소관 담당부서와 직접 연락하여 민원처리 절차 등을 확인한 뒤에 민원인에게 담당 기관과 부서를 안내하기도 한다. 또한, 관할권을 벗어난 고충민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거나 또는 관련 구제 절차 및 제도 등을 안내하여 민원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 위원회 관련 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주요 민원 사례를 수록한 운영상황보고서를 매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반사회보·안내용 팸플릿 등의 홍보물 배부, 강원도 및 도내 시군 홈페이지 홍보, 위원회 주요 동향 보도자료 배포 등 위원회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도 및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문교육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전수와 더불어 도와 시·군간 민원처리를 위한 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옴부즈만 워크숍에 참석하고, 해외 옴부즈만 벤치마킹과 국제기구 가입 등을 통해 국내·외 옴부즈만 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실시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전수하고 있다.

3. 위원회의 주요 권한

- 민원조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의 조사가 실시된다. 정확한 민원조사를 위해 위원회는 관련 기관 등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 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 관련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에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권고 및 의견표명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경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취소·변경·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감사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한 내용,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매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한다.

조례 제14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III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1. 고충민원의 정의

•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 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권익침해,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 민원 처리기준 및 절차 불투명,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그 밖에 행정과 관련된 권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등을 포함한다.

일반민원 VS 고충민원

구분	일반민원	고충민원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민원 :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신청, 등록·등재 신청 및 신고, 확인, 증명 등 - 질의민원: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 기타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2. 민원의 신청과 조사

• 고충민원 신청·접수

누구든지(재한 외국인 포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이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의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민원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청된 민원 중 관할권을 벗어나거나 관련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민원인에게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해 안내(심의안내) 한다.

조례 시행규칙 제4·5조

-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고충민원 조사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조례 시행규칙 제9·10조

- 제9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민원의 이첩과 중지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신청인에게 이첩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민원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거나 민원의 내용이 거짓 혹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민원처리 예외 대상(민원의 각하)

- 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③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⑤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⑥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⑦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⑧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의결 및 통지

• 심의·의결

사무국은 조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민원에 대한 결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조치(결정) 유형

- ①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권고
- ⑥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기 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⑧ 각 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⑨ 이 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 ⑩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처리결과 통지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신청인과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4. 재심의 및 사후관리

• 재심의

위원회의 결정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며,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을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또는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신청하는 반복 민원의 경우,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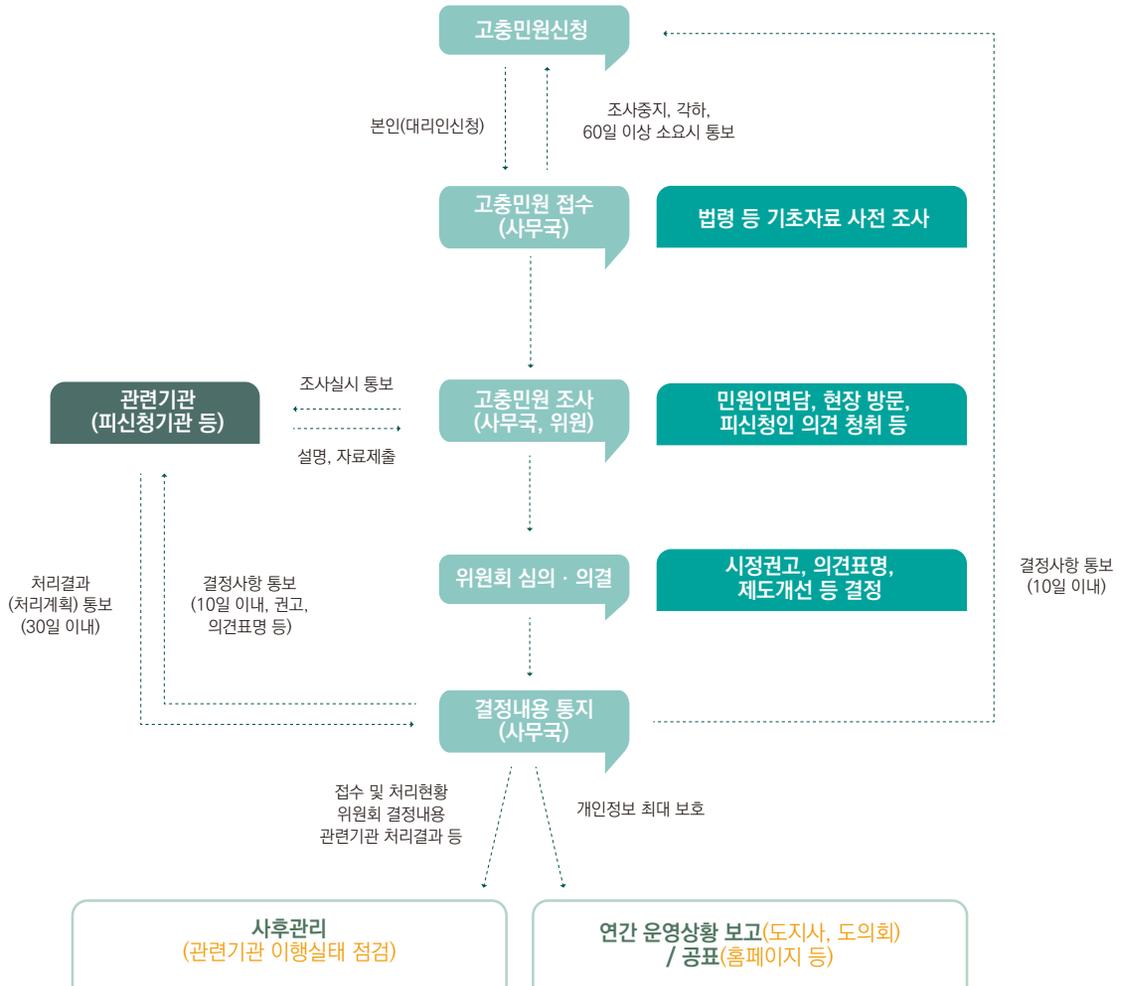
- ①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 결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위원회는 권고 등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고충민원 처리절차

- 처리기간 : 단순민원(즉시), 중대한 사안민원(60일)
- 처리절차



민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주소

<http://www.gwombudsman.co.kr>
전자민원(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우편 신청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 신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팩스번호

033-249-4133
※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시간

평일 09:00~18:00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강원도청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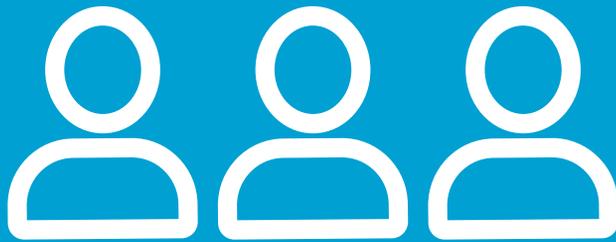
033-249-2301~3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민원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 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 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3

위원회 운영성과



I 고충민원 처리현황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2.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3.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 〈참고〉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목록

II 2020년 위원회 활동 사진

1. 민원 현장조사
2. 정례회 개최
3. 이동신문고 운영
4. 위원 변동사항 및 교육활동
5.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III 위원회 운영 성과(2012~2020년)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참고 1〉 연도별 위원회 주요 활동(2012~2019)

〈참고 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2013~2019)

I 고충민원 처리현황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총괄)

1)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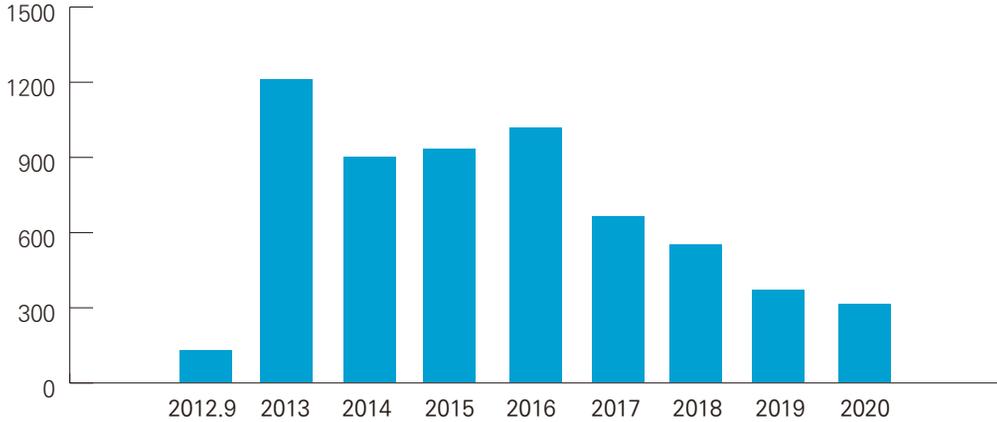
-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로 처음 설치된 2012년 9월부터 강원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6,068건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민원은 총 266건이다.
※ 2015년 10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개편
- 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은 전체 고충민원의 4.4% 내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부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특징이 있으며, 집단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화된 조사와 심층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 사실확인 및 조사대상 기관도 여러 개의 기관(부서)이 연관되어 있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민원 해결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총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구 분	합 계	위원회 접수·처리	상담, 불만, 건의 등	생활불편 등	단순문의 등
합 계	6,068	266	3,869	888	1,045
2012년 9월	128	17	64	4	43
2013년	1,207	39	872	141	155
2014년	897	24	692	30	151
2015년	930	29	552	92	257
2016년	1,016	25	623	88	280
2017년	662	24	407	154	77
2018년	548	23	360	125	40
2019년	367	45	195	102	25
2020년	313	40	104	152	17

※ '20년 국민신문고 등 접수민원 : '고충민원, 국민불편, 국민부담' 합산 건수
('20년부터 국민신문고, 강원도 홈페이지 접수민원의 세부기준 일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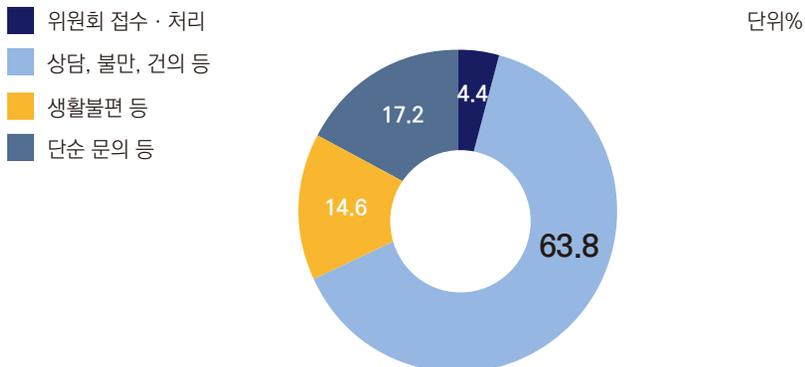
(강원도 총괄)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건수 변화('12.9월~'20년)



합계(건)	'12년 (9~12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6,068	128	1,207	897	930	1,016	662	548	367	313

※ (강원도 총괄) 국민신문고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 접수·처리 고충민원 + 위원회 처리 민원

(강원도 총괄) 고충민원의 유형별 구성 현황('12.9월~'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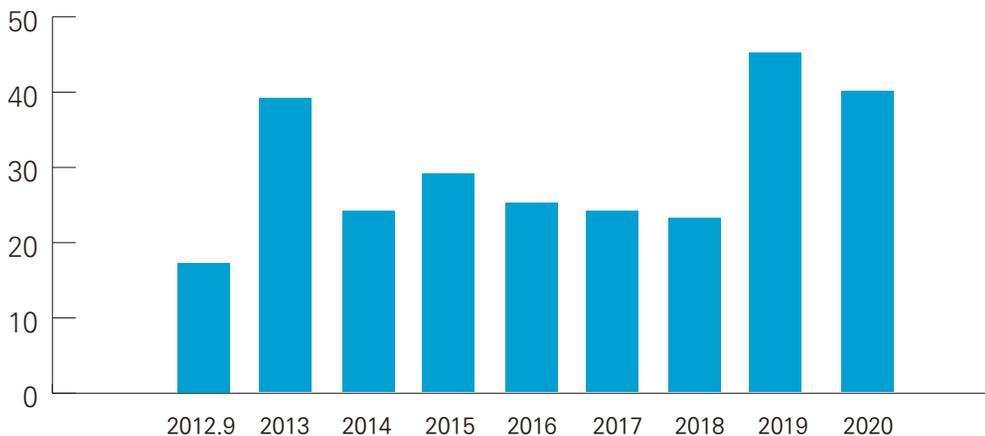


구 분	합 계	위원회 접수·처리	상담, 불만, 건의 등	생활불편 등	단순문의 등
합 계	6,068	266	3,869	888	1,045
비율(%)	100	4.4	63.8	14.6	17.2

- 2012년 9월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의 ‘연도별 고충민원 총괄 처리건수’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충민원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고충민원의 유형별 구성 현황을 보면 2012년 9월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건수는 총 266건으로 전체 고충민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국민신문고, 강원도 기관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부서, 사업소 등에서 처리한 고충민원들은 상담·불만·건의 등이 6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순문의의 17.2%, 생활불편 등이 14.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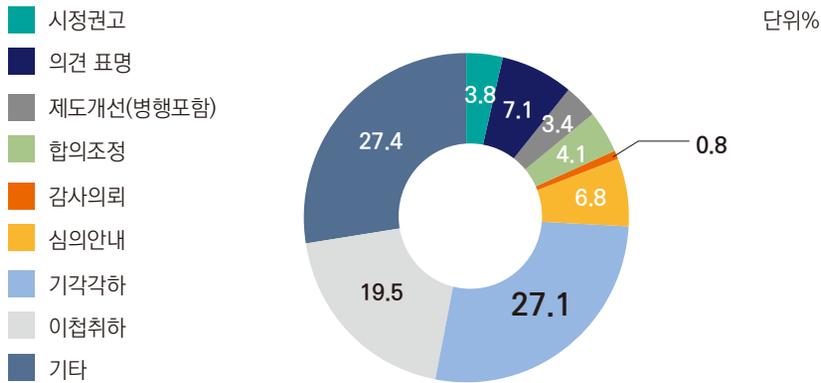
2)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12년 9월~’20년)

(위원회)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건수 변화(‘12.9월~’20년)



합계(건)	‘12년 (9~12월)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66	17	39	24	29	25	24	23	4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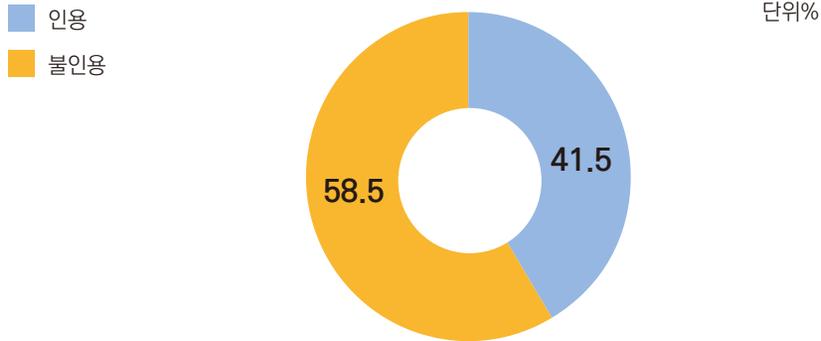
(위원회) 결정 유형별 고충민원 현황('12.9월~'20년)



구분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건수	266	10	19	9	11	2	18	72	52	73
비율(%)	100	3.8	7.1	3.4	4.1	0.8	6.8	27.1	19.5	27.4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6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위원회 결정유형별 현황을 보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19건, 제도개선 등 9건, 합의조정 11건, 감사의뢰 2건, 심의안내 18건, 기각·각하 72건, 이첩·취하 52건, 조사중지 및 사무국 즉결처리 등의 기타가 73건이다.

(위원회) 민원신청인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수용률('12.9월~'20년)



합 계		인 용		불 인 용(기각·각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23	100	51	41.5	72	58.5

- 위원회가 의결하고 처리한 민원 123건* 중에서 민원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용하여 결정한 '인용건수'는 51건**으로 전체 의결건수 123건 중 41.5% 차지하고 있다.

* 위원회 처리건수 : 총 123건 (수용률 산정 시, 결정 유형 중 '심의안내, 이첩·취하, 기타'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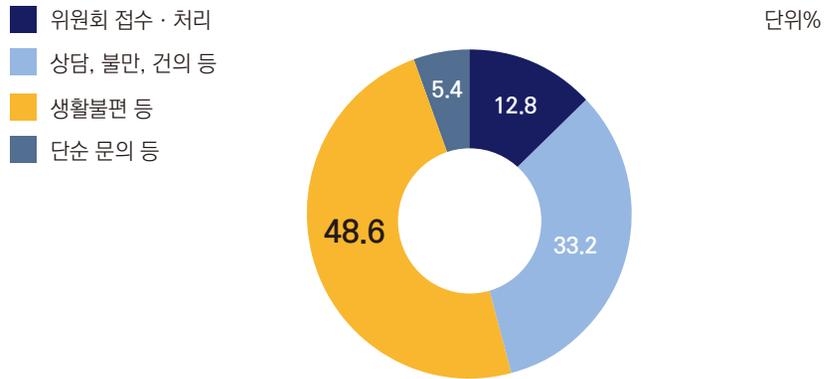
** 위원회 인용건수 : 총 51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병행포함), 합의조정, 감사의뢰)

2.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처리현황

- 2020년 강원도가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은 총 313건으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처리 40건, 국민신문고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처리된 '상담, 불만, 건의 등'이 104건, '생활불편 등'이 152건 '단순문의 등'이 17건으로 나타났다.
- 상담·불만·건의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사업과 관련한 건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개최·참여 자제 요청, 강원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사용에 따른 각종 건의, 도청 직원의 민원답변 불친절에 대한 불만,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또는 감사요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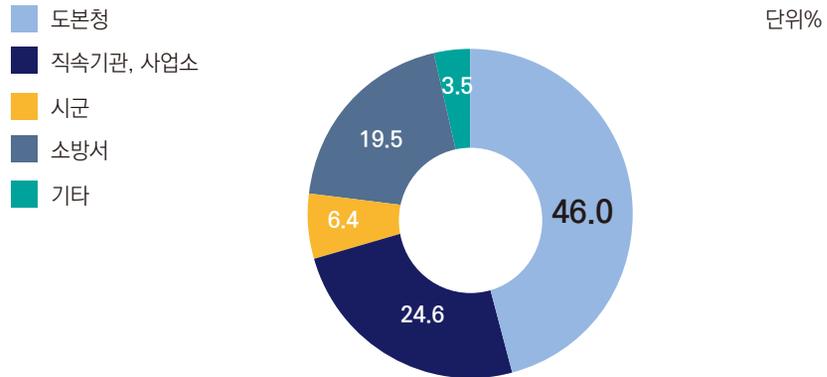
- 생활불편 신고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 도로 포장(공사) 불량이나 미포장 도로에 대한 개선요청, 낙석 발생 구간 정비 건의, 교차로 차선 개선과 같이 안전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요청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구분	합계	위원회 접수·처리	상담, 불만 건의 등	생활불편 등	단순문의 등
건수	313	40	104	152	17
비율(%)	100	12.8	33.2	48.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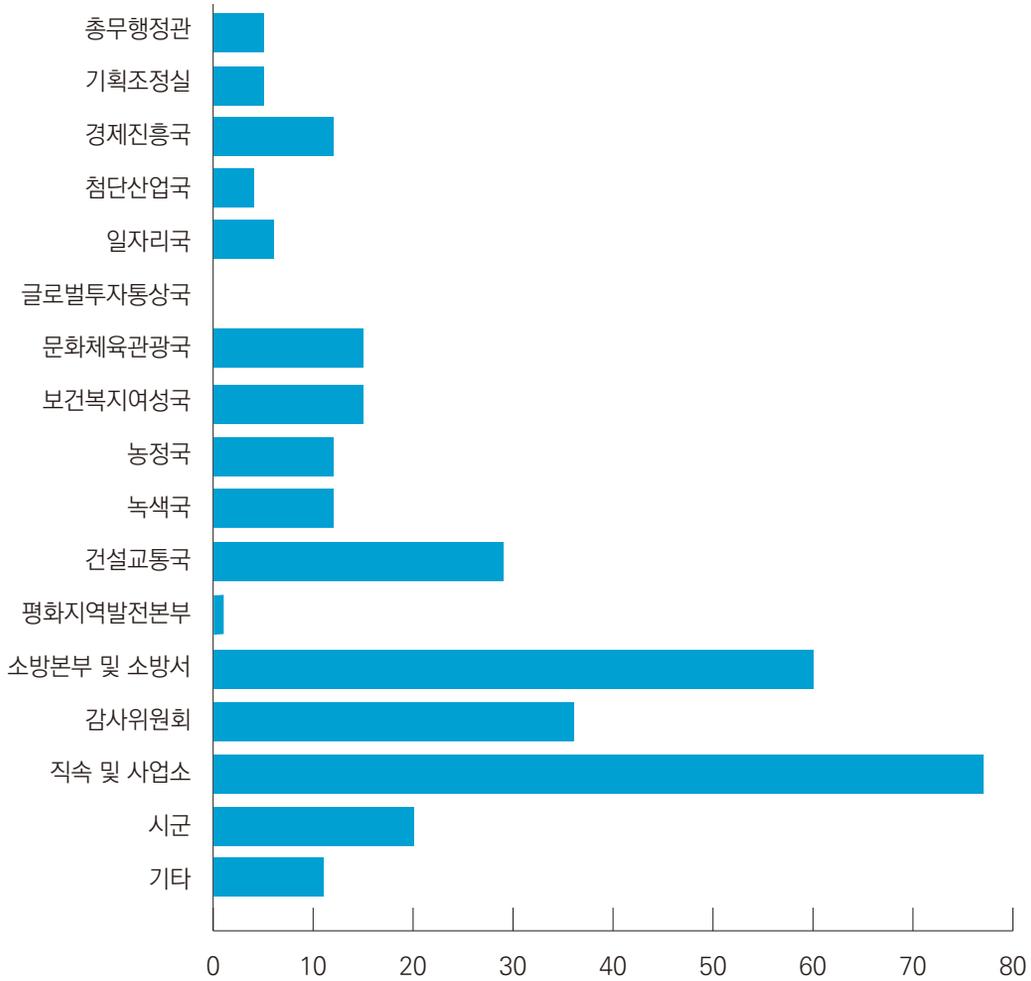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기관 (피신청기관별)



구분	합 계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소방서	기타
건수	313	144	77	20	61	11
비율(%)	100	46.0	24.6	6.4	19.5	3.5

- 2020년 강원도에 접수된 민원을 피신청기관별로 보면, 도본청이 144건으로 46%를 차지했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77건으로 24.6%를 나타냈다. 시군은 20건으로 6.4%를 소방서는 61건으로 19.5%, 기타는 11건으로 3.5%를 나타냈다.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접수기관(피신청기관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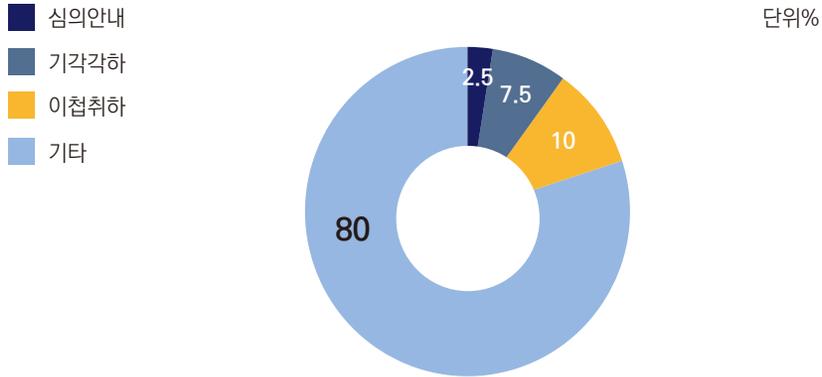
구분	합계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정국	녹색국	건설교통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감사위원회	직속 및 사업소	시군	기타
건수	313	5	5	12	4	6	0	15	15	12	5	29	1	60	36	77	20	11
비율 (%)	100	1.6	1.6	3.8	1.3	1.9	0.0	4.8	4.8	3.8	1.6	9.3	0.3	19.2	11.5	24.6	6.4	3.5

- 2020년 강원도에 접수된 고충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피신청기관을 살펴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가 77건(24.6%), 소방서가 60건(19.2%), 감사위원회가 36건(11.5%)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상위 3개 기관 및 실국의 고충민원 건수는 총 173건으로서, 이는 2020년 강원도 고충민원 총 건수 313건의 55%를 차지했다.
-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피신청기관(3개)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보면 각 시군 소방서에 신고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가 43건(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고충민원의 71.7%), 도로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관리(포장, 노면 등)'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31건(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소관 고충민원의 40.3%),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감사 및 행정조치 요청 등'이 18건(감사위원회 소관 고충민원의 50%)으로 나타나, 유사한 유형의 민원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피신청기관별로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연내 고충민원 처리건수 중 해당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이 20.8%(+63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증 4.8%(+7건), 문화체육관광국 3.4%(+10건) 순이며, 가장 줄어든 곳은 감사위원회 -28.5%(-111건), 건설교통국 -6.8%(-30건), 녹색국 -1.9%(-8건) 이었다.

※ 기타 : 강원도로 민원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공공기관 소관 등의 민원 해당

3.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처리현황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유형별 현황



합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개선 (병행포함)	합의 조정	감사 의뢰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첩 취하	기타	조사중
40	-	-	-	-	-	1	3	4	32	-
100%	-	-	-	-	-	2.5%	7.5%	10%	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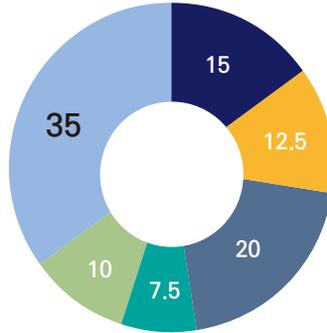
※ 처리건수: 고충민원의 접수일자(2020년 내) 기준

- 2020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접수·처리한 고충민원은 총40건이며, 이 중 9건은 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31건의 대해서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즉시 답변하여 처리완료하거나 소관 기관(시군 소관부서, 담당부서)을 안내하였다. 사인 간의 분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없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신청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분야별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안내하였다.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 도로교통건설
- 건축주택지적
- 농림환경산업
- 문화관광
- 복지
- 일반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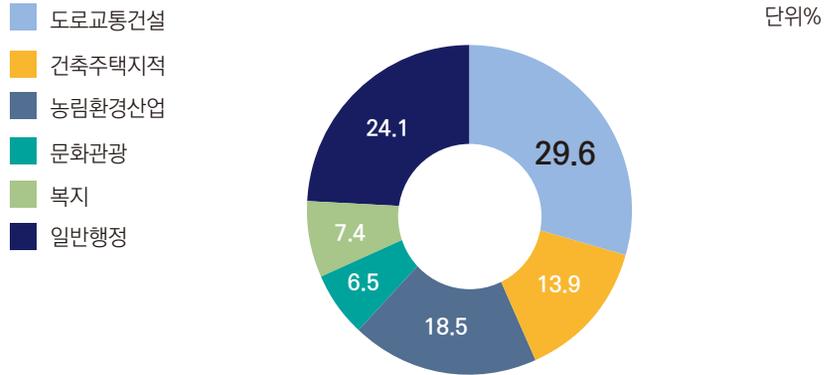
단위%



합계	도로교통건설	건축주택지적	농림환경산업	문화관광	복지	일반행정
40	6	5	8	3	4	14
100%	15%	12.5%	20%	7.5%	10%	35%

- 2020년 위원회와 사무국이 처리한 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고충민원이 14건 (35%)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농림·환경·산업 분야 8건(20%), 도로·교통·건설 분야 6건(15%), 건축·주택·지적 분야 5건(12.5%), 복지 분야 4건(10%) 순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충민원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로 6건이 증가하여 연내 고충민원 처리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17.2% 증가하였다. 그 뒤로는 건축·주택·지적 분야가 2건 증가(+5.8%)하였고 농림·환경·산업 분야는 3건이 감소(-4.4%)하였으며, 도로·교통·건설 분야는 10건이 감소하여 연내 처리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18년~'20년)



구분	합계	도로교통 건설	건축주택 지적	농림환경 산업	문화 관광	복지	일반 행정
소계	108건 (100%)	32건 (29.6%)	15건 (13.9%)	20건 (18.5%)	7건 (6.5%)	8건 (7.4%)	26건 (24.1%)
2018년	23	10	7	1	1	-	4
2019년	45	16	3	11	3	4	8
2020년	40	6	5	8	3	4	14

- 최근 3년간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도로·교통·건설 분야가 29.6%, 일반행정 분야가 24.1%, 농림·환경·산업분야가 18.5%, 건축·주택·지적 분야가 13.9%, 복지 분야가 7.4%, 문화·관광 분야가 6.5%로서 도로·교통·건설 분야와 일반행정 분야의 고충민원이 전체 고충민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 2020년 고충민원 접수·처리 목록

① 위원회 의결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소관부서)	결정결과
1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평창군	기타
2	사회복지법인 허가 취소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이첩
3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이첩
4	태양광발전허가 기간연장 관련	강원도 (에너지과)	기각
5	저지대 침수, 도로 위 물 유입 차단 대책 요청	양양군	각하
6	도시계획도로 계단 폐쇄의 건	인제군	각하
7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고성군 (해양수산과)	이첩
8	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처리에 대한 질의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이첩
9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속초시 (해양수산과)	심의 안내

② 사무국 처리(즉시답변, 소관부서 안내·연계)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소관부서)	처리결과
1	간이화장실 설치 요구	원주시	즉시답변 및 안내
2	시유지 불법건축물 철거 요구	속초시 (건축과)	"
3	강원도개발공사 하청업체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 부적절 관련	강원도개발공사 계약업체	"
4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내 토지 소유주 확인	-	"
5	양구 무주지 배당관련	국민권익위원회	"
6	춘천 석사3단지 층간소음	NH (한국토지주택공사)	"
7	행정착오로 인한 부동산 상속분	태백시 (세무과)	"
8	청각장애인 폭행 등(사인간의 갈등)	-	"

9	나잠어업행위 관련	속초시	〃
10	코로나피해 영농 운영지원방안 (춘천 덕산영농)	산림조합, 동내면사무소	〃
11	돌봄서비스 관련	강원서부보훈지청	〃
12	고성 봉포 아파트 분양하자 관련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
13	퇴비공장 악취	횡성군 (환경산림과)	〃
14	강원도 속초의료원 인사관련 고충	강원도 (공공의료과)	〃
15	6.25기도성회 집회	강원도 (문화유산과)	〃
16	국가하천 불법 횡단진입로 철거예정 따른 민원제기	원주시 (건설방재과)	〃
17	강원도지사 접견요청	강원도 및 홍천군	〃
18	주택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춘천시 건축과	〃
19	2020년도 강원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관련	강원도	〃
20	팔봉산 상가 입주자 생존권보장	홍천군	〃
21	영월군 토지이용 변경	영월군	〃
2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음식점 문제	원주시	〃
23	2020년 철원군 이길리(전락촌) 수해에 따른 마을 집단이주 부지 선정관련	철원군	〃
24	강원도개발공사 하청업체 부당하고 및 근로계약 부적절 관련,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보상 요구	강원도개발공사 (올림픽시설팀)	〃
25	가로등 설치 요청	양양군 (도시계획과), 양양군 현남면	〃
26	상수도 사업부 부실공사 피해	삼척시 (회계과)	〃
27	호적 확인 및 분리 가능 문의	강릉시, 정부	〃
28	간첩 누명으로 인해 억울함	정부	〃
29	귀농에 따른 취득세 감면 문의	강원도 (세정과)	〃
30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원주시 (토지관리과)	〃
31	스키장 안전사고 관련 분쟁	강원도 (체육과)	〃

※ 2020년 위원회 고충민원 접수·처리 목록: 접수일자 기준

II 2020년 위원회 활동 모습

1. 민원 현장조사



민원조사 -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2020.2월)



민원조사 -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2020.2월)



민원조사 -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2020.9월)



민원조사 - 의견청취 및 현장확인 (2020.9월)

2. 정례회 개최



2020. 2. 21. 정례회 (피신청기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모습)



2020. 7. 17. 정례회



2020. 7. 17. 정례회(고충민원 관련 현황자료 보고)



2020. 11. 20. 정례회

3.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 2020.8.19. 홍천군청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 2020.8.20. 태백시청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합동상담 - 2020.8.21. 영월군청



강원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홍보용 배너 - 2020.8월

4. 위원 변동사항 및 교육활동



연임 임기만료 위원(노승만, 김승희) 감사패 수여식(2020.4.17)



연임 임기만료 위원(박세기, 심준섭, 이해승) 감사패 수여식(2020.10.23)



신규 위촉위원(김영하, 정윤희) 위촉장 수여 및 환담(2020.5.22.)

2020년 05월 22일 (금)
인물 21면

江原日報

김영하·정윤희 도사회갈등조정위원 위촉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김원동)는 22일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윤희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다.

김영하 상임대표는 현재 원주YMCA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강원지역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윤희 책임연구원은 서울



◇김영하 위원



◇정윤희 위원

대 조경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에서 환경계획을 전공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2022년 5월 21일까지 2년이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위원 위촉사항 언론보도(2020. 5. 22, 강원일보)



신규 위촉위원 (좌측부터-이충호, 이현직, 주재복, 2020.10.29)



도내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고충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2020.8.18, 강릉. 심준섭 前위원장)

5.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 활동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차량 활용 비대면 홍보’



코로나19에 따른 ‘차량활용 비대면’ 홍보물 제작(2020.5월)



횡성군(횡성시장)



평창군(횡계로타리)



강릉시(강릉역 앞)



양양군(양양 전통시장)



춘천시(중앙시장)



철원군(신철원 전통시장)



원주시(중앙시장)



속초시(중앙시장 근처)

※ 차량 활용한 비대면 도민홍보 활동(4회, 11개 시군 / 2020.5월~12월) *시군별 전통시장 중심

(2) 위원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안)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시군별 홍보 현수막 게시모습

*4개 시군, 8개소 설치

(3) 강원도청 SNS(페이스북) 및 시군 홈페이지



강원도청 SNS(페이스북) 카드뉴스 홍보



강원도 및 도내 시군 홈페이지 게시용 배너(좌), 시군 홈페이지 배너 게시 모습(우)

III 위원회 운영 성과 (2012년~2020년)

1.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및 조정 기능 강화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2년 9월 도내 주요 고충민원과 갈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지역 옴부즈만인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로 출범하였다.
-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15년 10월), 전문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참고인 출석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바탕을 공고히 다져왔다.
- 또한, 국내 대규모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위원들을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권익위원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 위원들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억울함이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도내 곳곳의 애로 사항을 찾아 성심껏 상담·해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국무총리 표창 수상)



위원회 간담회



정례회의 개최



민원 현장조사

2.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기구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1차 IOI World Conference 총회에서 국내 지자체로는 최초로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한편, 2015년 11월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 Ombudsman Association)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17년에는 평창 알펜시아에서 AOA 회원국 대표단 및 국내·외 옴부즈만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5차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5.16~5.19, 4일간)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자체 대표 권익보호 리더로서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앞으로도 국제 옴부즈만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민의 권익 실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3.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이동신문고” 운영

- 우리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듣고 보다 친밀한 소통을 위해 방문, 우편, 전화, 팩스전송 등 다양한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접수 창구를 강화하였고,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이동신문고」를 매년 운영하여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강원도형 이동신문고」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도 인권센터 등과 합동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합동으로 3회(8월)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강원도형 이동신문고’는 운영하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는 이동신문고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도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 늘리고 도민 고충 해결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4.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등의 사회갈등을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6월 강원도 이·통장연합회를 비롯하여, 12월에는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각종 갈등이나 분쟁 요소들을 미리 찾아 해결하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특히, 2018년부터는 고충민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적분야 및 생활법률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으로 상담을 추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강원도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2019년 10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내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2018. 7. 16.)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과 업무협약
(2019. 10. 21)

(참고1) 연도별 위원회 주요활동 및 연혁(2012~2019)

2012년(출범)

중앙일보 2012년 09월 27일
R01면 (충청/강원)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했다.
강원도는 26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10월부터 공식 운영된다. 강원도는 그동안 갈등민원을 관료적 시각이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위원회 설

치를 추진했다. 지난 8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9월 10일 관련 시행규칙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처음이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앞으로 도와 소속기관의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운영된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개선

해 나가는 등 도민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활동 대상은 석산 개발, 환경, 폐광, 농림, 수산 분야 등 다수인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선별해 집중 조사 및 연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으로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환경에서 각종 갈등을 유발하는 고충민원의 해소와 완충 조정역할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17.3*4.8)cm

강원도민일보 2012년 07월 04일
02면 (종합)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도의회, 조례안 발의... 민원처리 갈등 등 해결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줄 전문기구 설치 추진에 나선다.
김기홍(원주·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개최하는 제221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은 도 및 소속 기관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책적 갈등 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또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있거나 운영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기능도 갖추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 출신 학자, 4급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등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처리를 완료한 고충민원의 결과 보고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민원사항 상담 및 처리 지원 △국제기구 및 외국 권익구제기관 간 협력 및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여진 beatle@kado.net
(10.2*12.1)cm

2013년



고충민원 관계자 워크숍 (2013년 4월)

강원도민일보
2013년 05월 21일 02면 (종합)

**도 고충처리위원장
신철영씨 선출**

제2대 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신철영 (63·사진)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도 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오전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고충처리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례회를 열고 전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고충위 위원장에 신철영 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출신인 신철영 신임 도 고충처리위원장은 천안고 서울대를 졸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거쳐 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안은복 (4.9~10.1)cm



신철영 위원장 위촉 (2013년 5월)



태국 옴부즈만 강원도 방문 2013년 7월

강원도민일보

2013년 07월 17일
02면 (종합)

道, 옴부즈만 국제기구 가입 추진

세계·아시아 옴부즈만협 2곳
정부 적극 지원... 가능성 커

강원도가 국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옴부즈만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신철영)'의 행정 서비스와 도민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가입을 추진하는 옴부즈만 국제기구는 세계 옴부즈만 협회(IO)와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2곳.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IO와 AOA 가입 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강원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해 가능성이 높다.

이날 도를 방문한 태국 국가 수석 옴부즈만(장관급)인 파닛 니티탄프라파(69·여)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장 일행과 김기선 국민권익위 국제 교류담당관 등은 최문순 지사와 '옴부즈만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지사는 이날 접견에서 "광역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가 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했다"며 "국제기구에 공식 가입되면 도민 권익 향상뿐 아니라 동계올림픽 홍보 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닛 니티탄프라파 회장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범적 사례"라며 "오는 10월 AOA 이사회에서 강원도가 가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협회(IO)는 1978년 설립돼 현재 100개 국 135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사무국은 오스트리아에 있다. 또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는 1996년 설립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사무국이 있고 일본 중국 태국 등 17개 국 24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안은복



■옴부즈만제도=옴부즈만제도는 대리인, 대변자의 뜻을 가진 스웨덴어 'ombud'에서 유래한 단어로 1809년 스웨덴에서 사법부나 입법부에 비해 권한이 커진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됐다. 정부의 정부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언론, 사회, 정치, 경제 각 분야에 도입되면서 국민의 불만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15.5*12.1)cm

2014년

KBS

강원도, '국민신문고 대상' 총리 표창 수상

강원도는 국민신문고 대상
옴부즈만 부문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도청 기획관실
임형준 주무관도 옴부즈만
개인부문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개인 부문 국무총리

강원도의 이번 수상은 지난해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개인 부문
국무총리표창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동안 고충민원 처리 실태
확인조사 평가 결과 강원도가
우수기관, 임형준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강원도민일보

곽태섭 도 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국무총리표창

곽태섭(57) 도 고충처리위
원의 사무국장이 새정부 출범
이후 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무
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곽 국장은 지난 27일 서울 프
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국민권익의 날
및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옴부즈만 개인활동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곽 국장은 지난해 강원도고

충처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 민원과 골프장 집단
민원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인
정받았다. 안은복



2014 옴부즈만 글로벌컨퍼런스참석 (2014년 7월)



2014 신문고 시타식 (2014년 3월)



갈등조정 전문가·민원 관계관 포럼 (2014년 11월, 강원발전연구원)



2015년

강원도민일보

2015년 09월 22일
02면 (종합)

도사회갈등조정위 출범

강원도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을 '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과 조직을 전면 확대 개편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강원도 사회갈등 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도민들의 고충 민원 해소라는 기존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과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과 해결에 적극 나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집단 민원 및 갈등 문제는 기존에 발생 후 조정 해결 방식에서 발생 단계부터 조정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전문조사 관제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갈등 조정 역할을 상설화,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오민** (5.0*12.0)cm

江原日報

2015년 11월 27일
02면 (종합)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2017년 평창서 개최 확정

2017년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Asian Ombudsman Association) 총회가 평창에서 열린다. 도는 지난 25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4차 AOA 이사회 및 총회에서 도가 차기인 2017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유

치 신청을 했으며 이날 총회 때 러시아에서 독립한 조지아공화국과 경합을 벌인 끝에 회원국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확정됐다. AOA는 1996년 설립돼 22개국 35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 AOA 총회는 4~7월 사이 3일간에 걸쳐 평창 일원에서 22개국 35개 권익보호기관(옴부즈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국내외 옴부즈만, 주한외국대사관, 학계인사 등 400여명이 참가해 옴부즈만 제도와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15년 11월 27일
02면 (종합)



강원도가 지난 25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및 총회에서 2017년 열리는 제15차 AOA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2016년

강원도민일보

2016년 02월 23일
19면 (지역)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정례회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42차 정례회가 22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신철영 위원장,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곽태섭 상임위원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6.8*6.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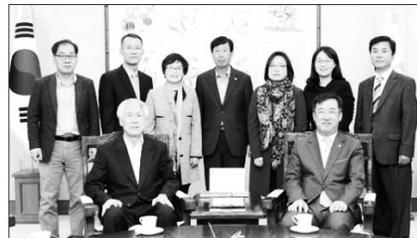
제1기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2016년 9월)



2016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
16.6월.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민일보

2016년 10월 18일
10면 (인물)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1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신임 조정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7.5*6.3)cm

매일경제

2016년 12월 19일
(충청)

중소기업 권익신장·고충해결로 '행복한 강원 만들기' 협력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도내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9일 원주에서 일선 기업경영 현장의 각종 민원과 갈등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민과 중소기업 권익 신장, 경영상 불편한 고충 민원 해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현장 중심 민원행정 실현에 나선다.

공공정책 수립·추진 때 이해관계 충돌을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한다.

중소기업 육성·편익제공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서로 협력한다.

도내에는 총 13만3천314개 기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99.9%인 13만3천240개가 중소기업으로 도민 5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도영 도 산업경제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고충 민원 해결과 함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철영 도 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앞으로 각종 행정규제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해결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회갈등조정위는 지난 6월 일선 생활현장에서 신속한 고충 민원 해결로 실질적인 도민 권익이 증진할 수 있도록 도 이통장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업무협약을 해 권익증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다.

limbo@yna.co.kr

강원도민일보

2016년 09월 21일
02면 (종합)

이·통장이 사회갈등 조정 나선다

도 이통장연합회·사회갈등조정위 업무협약
민원 조율 협조 주민 권익보호 사다리 역할

강원도 행정의 모체역할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이·통장들이 집단민원 등 사회갈등 초기단계부터 조정에 나서기로 해 효과가 주목된다.

강원도이통장연합회(회장 윤천로)는 20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철영)와 평창 알펜시아에서 생활현장의 민원과 갈등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통장들은 갈등이나 분쟁요소들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생 일선에서 행정과의 기교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18개 시·군

의 4155명의 이·통장들이 고충민원 처리의 최일선에 서게됐다.

이·통장들은 주민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불만사항들을 발생단계에서부터 파악, 지역 여론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만큼 도 차원의 공공갈등관리도 현장밀착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장들은 도내 산하기관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 양측간 의견 조율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소외·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원 수요약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강원도이통장연합회(회장 윤천로)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2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민원과 갈등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천로 도이통장연합회장은 "지역 곳곳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철영 사회갈등조정위원장은 "삶의 현장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 분들이 나서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행정을 보다 촘촘하게 돌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사회갈등조정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권익진중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통장협의회에 이어 도내 복지단체와 중소기업, 각종 사회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잇달아 체결, 사전 갈등관리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김여진

(24.1·13.5cm)



세계옴부즈만협회 정회원 자격 획득(2016년 11월)

2017년

강원도민일보

2017년 05월 12일
10면 (인물)

세계 각국 옴부즈만 기관 운영노하우 배운다

AOA총회·글로벌 컨퍼런스 16일 평창 알펜시아서 개막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및 2017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오는 16일부터 4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를 주제로 20개국, 35개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회원기

관과 초청연사, 주한외국대사, 국내 옴부즈만,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총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제15차 AOA 총회는 창립 20주년을 기념 AOA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에서, 국가와 지역 옴부즈만이 함께 주최하는 행사여서 관심을 받고 있다. 도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올림픽과 도의 관광자원 홍보를 행사의 주요 목표로 삼아 대회를 준비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5년 11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AOA정회원

지위를 획득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이 됐다. 1996년 설립된 AOA는 각국의 옴부즈만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2년(홀수년) 주기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옴부즈만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계 옴부즈만 기관의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배우는 절호의 기회"라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아름다운 강원도를 전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17.2*7.9)cm

江原日報

2017년 04월 28일
19면 (도표인)

경기도 시흥시가 201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호민관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사전에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 보호

와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시민호민관의 핵심적 역할은 시민의 권익구제이지만 이 밖에도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원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4년 동안 총 85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하면서 시흥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도도 2012년 10월부터 시민호민관과 거의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출범 초기 명칭은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흥시의 시민호민관은 1명의 상근독임제로 운영되는 반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9명의 위원(옴부즈만의 합의 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강원도의 경우 사무국장 외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 비상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명방식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강원포럼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IOI는 전 세계 옴부즈만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197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11개국 185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국민권익

위원회와 함께 오는 5월 16-19일 4일간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를 개최한다.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AOA 총회는 국가 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과 지역 옴부즈만(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 공동으로 유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강원도는 이미 2015년 11월에 국내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AOA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번 평창 AOA 총회에는 아시아 25개국의 옴부즈만과 실무자, 국내 지역 옴부즈만과 유관기관 등 400여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홍보를 겸해 열리는 이번 AOA 총회는 전세계 옴부즈만과의 연대 및 경험 공유를 통해 강원도민들에게도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6*17.8)cm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4년여 동안 총 4,178건의 민원을 처리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실적으로 2013년 국민신문고대상(옴부즈만 분야) 수상에 이어 2014년에는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을 정도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평창 AOA 총회 개최 의미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속초시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강원도 전체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지역 옴부즈만 가운데 유독 강원도와 시흥시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 두 곳의 옴부즈만은 단지 지역 차원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에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국내 지역 옴부즈만으로 유일하게 정회원 자격을,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순회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개최(2017년 5월)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2017년 5월)

2018년

제1장 위원회 개관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 운영성과
제4장 2020년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5장 참고자료

江原日報

2018년 1월 16일 (종합)

[포토뉴스] 지적재산권 민원 해결 업무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본부장:심우섭)와 도시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신철영)는 15일 도청에서 도내 지적재산권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16일 도내 소외취약계층 고충민원 권익구제 법률서비스제공"



【강원타임즈】 김장희 기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대한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가 도내 소외계층의 권익향상과 법률 구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원도형 '이동신문고' 운영(2018년 10월)



고충민원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2018년 12월)

2019년

제1장 위원회 개관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 운영성과

제4장 2020년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5장 참고자료

江原日報

김원동 도 사회갈등조정위원장 선출

2019년 06월 18일 (화)
인물 21면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신입 위원장에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원간 호선을 통해 김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17일부터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춘천사회혁신파크 운영 민관협의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학회 회장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갈등관리 분야 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김원동 위원장 선출(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연계 '지역형 이동신문고' - 정선군, 2019년 4월



'강원도형 이동신문고' 운영 - 속초시, 2019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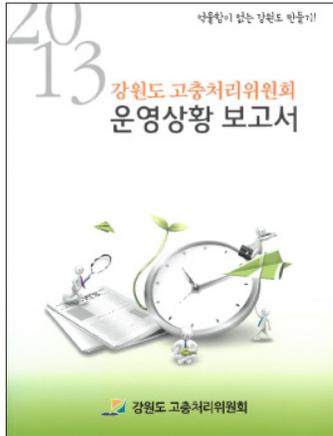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과 업무협약(2019.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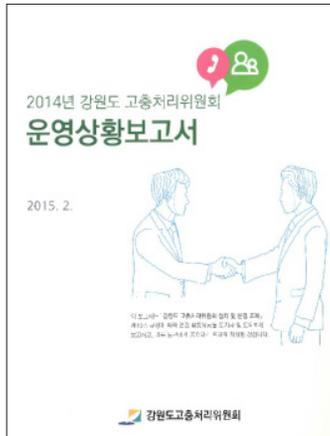


강원도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2019.9월, 강릉시)

(참고2) 연간 운영상황 보고서 발간(2013~2019)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4

주요 고충민원 처리 사례

I 태양광발전허가 기간연장 관련

II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III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IV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V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2020년 고충민원 처리사례

연번	주요내용	관계기관 소관부서	처리 결과
1	태양광발전허가 기간연장 관련	강원도 (에너지과)	기각
2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삼척시 (건설과)	각하, 의견표명
3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고성군 (해양수산과)	이첩
4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속초시 (해양수산과)	심의안내
5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평창군	기타

※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은 2019년 12월에 접수, 2020년 3월에 의결 처리함

I 태양광발전허가 기간연장 관련

- 신청인은 강원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16.11월)를 받은 뒤, 철원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18.2월)했으나 개발행위 불허가를 통보('18.6월)받았고, 철원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그러나, 개발행위 소송이 진행된 1년 동안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준비기간(3년) 만료 4개월 후에 기간연장을 요청함
-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허가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호,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기간연장 관련 민원
2. 신청인 : ○○○(경기도 김포시)
3. 피신청인 : 강원도(에너지과)
4. 결정사항 : 기각
5. 결정일자 : 2020. 5. 22

이유

1. 신청원인

- 가. 2016.11.14. (주)OO태양광 외 2개 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OO리 산 OO-0등의 필지에 3,000kw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음
- 나. 그러나 철원군에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여 민원신청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으며, 철원군으로부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취소 공문을 받고나서야 발전사업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발견함

- 다. 기간만료일을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발전사업관련 개발행위가 소송중이었으므로 소송이 진행된 1년여의 기간은 정지되거나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발전허가증을 받고난 3년동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고지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었음
- 라. 또한 경기도 연천군은 기간이 지나도 당사자가 허가 취소나 반납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등록면허세도 고지된다는 사실을 통보해왔음
- 마.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준비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였으나 지침등에서는 3년으로 정해놓고 민원인의 실수에 어떤 구제절차도 없이 기간만료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기간연장 불가 통보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람

2. 피신청인 의견

- 가. 전기사업법 제7조(시행 2000.3.8) 준비기간 연장 사항은 당초 “전기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전기사업법 제9조(시행 2001.2.24.)로 개정되면서 관련 조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나.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 기간 연장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만료하기 전에 종전의 기간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늘리는 것을 말하므로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연장이란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 다. “발전사업허가증 허가조건에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함에따라 준비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3. 사실관계

- 발전사업 허가(시행사→도) : '16.11.14
-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행사→철원군) : '18.2.27
-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철원군→시행사) : '18.6.25.
-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소송 및 판결(의정부지방법원) : '19.10.17
- 발전사업 준비기간 만료 : '19.11.13
-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 및 서류보완요청(철원군→시행사) : '19.11.28
- 발전사업 기간 연장 신청(시행사→도) : '20.3.23

4. 판단

- 가. 해당업체는 발전사업허가 당시 허가 조건에 준비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허가증에 명시된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나, 신청인은 사업준비 허가기간 만료 4개월 후 기간연장을 요청함
- 나. 「전기사업법」은 사업 준비기간이 10년을 넘을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발전사업별 준비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태양광사업은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함
- 다. 해당 사업자는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철원군과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판단됨
- 라. 그러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발전사업자가 당초 준비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제출하는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이는 당초 허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판단됨
- 마. 또한 「전기사업법」 제12조 1항 2호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당시 발전사업 준비기간은 3년으로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허가증에 명시하였음
- 바. 이 사건과 유사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가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며,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음(2009헌바 70 결정)
- 사. 따라서 해당 발전사업은 허가만료일이 경과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허가 요건을 갖추어 다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함

5. 결론

허가기간 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연장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7호에 따라 “기각” 하고자 한다.

II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 본 민원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및 제14조에 반하여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 과정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허가의 취소 및 해당 부지 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
- 피신청기관의 허가과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는 있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와 이에 따른 삼척시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각하”하고,
- 기 허가자(ㄱOO)가 해당부지 내 미거주하고 건축물 관리에 소홀하여 마을 미관을 해치고 폐가로 방치한 것은 허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음이 인정되어, 삼척시는 신규 소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시 허가 목적 및 사유를 분명히 하고,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점검 시, 허가 목적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OOO호, 소하천 점용 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2. 신청인 : OOO(강원도 삼척시)
3. 피신청인 : 삼척시(건설과)
4. 결정사항 : 각하, 의견표명
5. 결정일자 : 2020. 3. 20

이유

1.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삼척시 OO길 OOO-OO에 거주 중이며, 인접한 하천(OO동 OOO천)에서의 점용 관련 허가가 위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함

- 나. 삼척시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ㄸOO)가 아닌 권리 없는 자(ㅇOO, ㄱOO)가 점·사용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ㄱOO가 점용허가만 받고 실제 미사용 중인 OO동 000천 부지를 허가기간이 만료('15.12.31.)되어 점·사용 권리가 실효되었음에도 580일이 경과한 2017년 8월 4일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기간연장을 허가하였으며, 같은날 양도에 관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은 ㄱOO에게 권리·의무 승계를 허가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다. 또한 소하천대장의 관리 부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만·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관리하지 않았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강원도 감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역시 삼척시가 ㄱOO에게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과 권리·의무 승계 허가를 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라. 신청인은 삼척시가 2008년 ㅇOO에게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무속행위, 화재위험, 마을경관 훼손, 야생동물, 심리적 불편 등)를 받아 왔으며 위법한 점용허가 이기에 2019년 4월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기허가자의 동의가 없어 삼척시에서 반려함
- 마. 본인의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반려한 삼척시와 불법으로 승계된 기 허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ㄱOO에게 허가된 사항은 취소되어야 하고 건축물 역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함

2. 피신청인 주장

- 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르면 권리·의무 승계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척시에서는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제출된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처리하였으며, 양도에 대한 계약서 등을 검토하지 않고 현지 확인을 소홀히한 부분에 대해 '18년 선거철 공직감찰을 통해 감사 처분 되었음
- 나. 또한 소하천 점·사용 기간연장 및 관리실태 부적정, '16년~'17년 소하천 관리실태 부실 역시 감사 처분 되었음
- 다. '18년 선거철 공직감찰 기간 실시한 감사 이후 조치계획에 의거하여 기점용자의 소하천 제2018-00호로 실제 점용면적을 실태조사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를 변경하였음
- 라. 향후 허가기간 도래로 인한 기간 연장이 신청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 외의 반려 사

유는 없으므로 기점용자의 기간연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 또한 해당 소하천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동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의거 OO동 000번지는 녹지지역에 해당되어 건폐율이 20%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이 56.29㎡이므로 (220㎡의 20%·44㎡, 56.29㎡·25%) 분할이 불가능함

3. 사실 관계

- '56년 “ㅂOO”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록(미등기건축물)
- '74.12.20. 하천구역 소유권 등록(소유자 國)
- '01.01.01. 최초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자료 부존재)
- '08.07.14. 소하천 점·사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자료 부존재)
 - 허가위치 : 삼척시 OO동 000번지선 128㎡
 - 허가기간 : 2006.01.01. ~ 2010.12.31.
 - 수허가자 : (당초) ㅂOO
(변경) ㅇOO
- '10.08.03. 소하천 점·사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자료 부존재)
 - 허가위치 : 삼척시 OO동 000번지선(000천) 128㎡
 - 허가기간 : 2006.01.01. ~ 2010.12.31.
 - 수허가자 : (당초) ㅇOO
(변경) ㄱOO
- '10.12.31. 소하천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 허가위치 : 삼척시 OO동 000번지선(000천) 128㎡
 - 허가기간 : 2011.01.01. ~ 2015.12.31.
 - 수허가자 : ㄱOO
- '17.08.04. 소하천 점·사용 권리의무 승계 및 기간연장
 - 허가위치 : 삼척시 OO동 000번지선(000천) 128㎡
 - 허가기간 : (당초)2011.01.01. ~ 2015.12.31.
(변경)2016.01.01. ~ 2020.12.31
 - 수허가자 : (당초) ㄱOO
(변경) ㄷOO

- '18. 4월~6월 선거철 공직감찰 기간 감사 실시
 - 감사시행 : 강원도 감사위원회
 - 처분내용 : 소하천 점·사용 기간연장 및 관리실태 부적정 소하천 권리·의무 승계 및 민원처리 부적정 등
 - 처분요구 : (행정처분) 기관 '주의', (문책처분) 담당자 2명 '훈계'

- '18.08.22. 소하천 점·사용(변경) 허가(감사결과 조치)
 - 허가위치 : (당초)삼척시 OO동 000번지선(000천) 128㎡
(변경)삼척시 OO동 000-27번지선(000천) 150㎡
 - 허가기간 : 2016.01.01. ~ 2020.12.31.(최초 점용일 2001.01.01.)
 - 수허가자 : ㄷOO

4. 판단

가. 본 민원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및 제14조에 반하여 소하천의 점·사용 허가 및 권리·의무 승계 과정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허가의 취소 및 해당 부지 내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판단됨

나.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르면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을 시장·군수로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 19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관리청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18년 선거철 공직감찰 기간 동안 실시한 감사에서

1)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본 민원 관련 소하천 점·사용 기간연장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소하천 점·사용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척시는 허가기간이 2015. 12. 31. 만료된 후 연장허가 없이 2016. 1. 1.부터 2017. 8. 3.까지 580일 동안 소하천 부지를 불법 점·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소하천 점·사용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없이 2017. 8. 4. 소하천 시설의 점·사용 기간 연장을 허가하였고 관리실태 점검시 2016년 “양호”, 2017년에는 미실시하는 등 소하천 점·사용 연장 허가 및 소하천 관리 실태 업무의 부적정함을 지적함

2) 또한 소하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 허가내용 관련 서류와 권리·의무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삼척시는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 시 권리·의무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승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하여 승계 신고를 처리하는 등 권리·의무 승계 업무의 부적정함을 지적함

-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척시는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2015년 “10년”에서 “준영구”로 변경하였음에도 2010. 8. 3. 신청한 소하천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2018. 4. 3.까지 보관·관리하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부적정함을 지적함
- 4) 이에 따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는 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 담당자 2명에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함

라. '18년 선거철 공직감찰 기간 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 1) 삼척시에서는 기관 ‘주의’, 담당자 2명 ‘훈계’ 처분 조치하였고, 기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 하였으며 점·사용 기간 연장 허가의 부적정함에 대해 허가대장의 주기적 관리로 기간만료일 도래 전 연장 신청을 안내하여 불법 점·사용의 사례를 예방하도록 조치함
- 2) 소하천 관리 업무의 부적정함에 대해서는 소하천시설의 관리 및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연1회 실시하여 하천 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조치함
- 3)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부적정함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업무편람 등 규정을 더욱 연찬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 전파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함

마.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 및 삼척시의 조치 결과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 및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민원의 각하 등)에 따라 ‘각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신청인은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ㅂOO을 배제한 매매계약서는 무효이므로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ㅂOO과 다음 소유자 간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며, 현재 삼척시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ㄱOO을 사실상 소유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관할권을 벗어남

사. 그러나 삼척시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허가목적이 대지·주거목적(대지)·대지·기타-대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기 허가자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용부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ㄱOO은 허가부지 내 건축물을 관리하지 않아 마을 미관을 해치고 폐가로 방치는 등 허가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삼척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 따라서 삼척시에서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신규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 시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허가목적 및 사유를 분명히 하고, 기 허가사항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점검 시 허가목적의 부합 여부도 점검하여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본 민원은 피신청기관의 허가과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는 있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와 이에 따른 삼척시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각하” 하고, 기 허가자(ㄱOO)가 해당 부지 내 미거주하고 건축물 관리에 소홀하여 마을 미관을 해치고 폐가로 방치한 것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삼척시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신규 소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시 허가 목적 및 사유를 분명히 하고 같은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점검 시 허가목적의 부합 여부 역시 점검하여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련 사진

1. 현장사진





2. 피신청기관 의견 청취



III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 2012년 작성한 이행각서의 위반에 따른 보망장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보망장 관련 인·허가 및 보망장 관리·감독의 주체가 고성군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을 이첩하고 조치결과 통보를 요청한 사례
- (신청인은 정치망영어로조합 법인이 2012년 00리 주민과 정치망영어로조합법인, 고성군이 작성한 이행각서 제5조 ‘세척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어구 반입을 절대 금지한다.’ 를 위반하였고, 제6조 ‘위반 시 보망장을 즉시 폐쇄하기로 한다.’ 및 제7조 ‘제5조 위반시 고성군은 즉시 보망장을 폐쇄하기로 하며 보망장 이용자는 고성군의 행정조치를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에 따라 보망장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199호, 정치망어구 보망장 폐쇄 요구
2. 신청인 : 000(강원도 고성군)
3. 피신청인 : 고성군(해양수산과)
4. 결정사항 : 이첩(사무국 처리)
5. 처리일자 : 2020. 9. 24

이유

1. 신청원인

가. 2012년 정치망영어로조합법인과 고성군, 00리 주민은 00리 산00번지를 정치망어구 보망장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음

나. 해당 법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행각서 제5조 ‘어업인들은 세척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어구 반

입을 절대 금지한다.’ 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세척하지 않은 어구를 반입하여 탈망(그물을 털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작업을 하고 있고,

다. 탈망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은 농수로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있음

라. 이행각서 제6조에는 ‘제5조를 위반할 시 정치망어구 보망장을 즉시 폐쇄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망장은 폐쇄되어야 함

마. 또한 이행각서 제7조 ‘고성군은 제6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망장을 폐쇄조치하며, 보망장을 이용하는 자는 이의 없이 고성군의 행정조치를 수용할 것을 약속한다.’ 에 따라 합당한 행정조치를 펼쳐주시기 바람

2. 피신청인 의견

가. OO면사무소

- 민원발생 원인은 과거 2012년 000-1번지 보망장 운영과 관련하여 OO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서 및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최근 산00-2번지에서 별도의 보망장이 운영되려하는 상황에서는 OO리 이장이 주민들의 동의없이 보망장 운영을 동의하여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됨. 이러한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망장까지 확대되었고, 탈망 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인근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갈등이 현내면 전체로 확대된 상황임

나.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에서는 보망장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이행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고성군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함.(시설비 일부가 고성군에서 지원됨) 또한 본 민원과 관련한 법률자문 결과, 행정에서는 이행각서만으로 폐쇄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함

3. 현장확인 등 검토결과

가. 산00번지 내 보망장 운영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산지전용허가 또한 「산지관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을 명시함

다. 산지전용허가 현황

지번	면적	허가사항	비고
000-1잡	16,382㎡	X	산00에서 분할 산지전용 후 지목변경 完
산00	31,425㎡	X	
산00-1	954㎡	X	산00에서 분할
산00-2	5,520㎡	O	산00에서 분할 산지전용 中

라. 현장 확인 결과

- 탈망 작업 시 발생하는 이물질은 보망장 내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배수로로 채운 이물질은 강우 시 인접 하천으로의 유입이 우려됨
- 또한 탈망작업 장비는 비산먼지(이물질)를 최소화하기 위한 덮개설치 등의 대책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짐
- 現 보망장 000-1번지 외 산00번지는 보망예정 어구 또는 폐어구(추정)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었고, 탈망작업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쌓아 둠

4. 판단

가. 고성군 00면 00리 내 정치망어구 보망장 운영을 위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고성군수
이므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관할권을 벗어남

나. 또한 주민과 고성군, 정치망영어조합법인 3자간 체결한 이행각서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각서에 명시된 고성군에서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이행각서 주체인 고성군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①탈망작업 장비 덮개 설치 등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②정기적인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이물질 하천유입 최소화, ③000-1번지 외 어구 적치 및 보망작업 중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따라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에 따라
관련기관(부서)로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관할권을 벗어나는 사안이므로 피신청
기관(고성군)으로 '이첩' 하기로 함

현장 사진

1. 배수로 현황



2. 이물질 분포 현황



3. 보망장(○○○-1번지) 외 이용현황(산○○임)



제1장 위원회 개관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원회 운영성과

제4장 2020년 주요 고충민원 처리사례

제5장 참고자료

4. 인접 하천



5. 탈망작업 장비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

IV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 속초시 대포항 상가는 개발 당시 어촌계에 10년 무상으로 건물과 영업권을 주었는데, 규정 상 전매 및 임대를 할 수 없게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가가 있어, 속초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한 달이 되도록 조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
- 위원회 사무국에서 속초시에 확인해 본 결과, 본 민원과 동일한 건이 속초시에도 접수되어 10월 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게 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심의안내' 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201호, 속초시 대포항 상가건물 불법 전대
2. 신청인 : ○○○(강원도 속초시)
3. 피신청인 : 속초시(해양수산과)
4. 결정사항 : 심의안내
5. 처리일자 : 2020. 10. 19

이유

1. 신청원인

- 가. 대포항 내 상가(A, B, D동)는 개발 당시 어촌계에 10년 무상으로 건물과 영업권을 주었는데 규정상 전매 및 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나. 그러나 현재 불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가, 가게가 있어 속초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보조사업 시설물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추후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량한 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한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음

다. 속초시와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묵인 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함

2. 피신청인 의견

가. 대포항은 국가어항으로 어항시설물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이지만 상가건물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보조 사업임

나. 본 민원과 동일 건이 속초시에도 접수되어 10월 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3. 판단

가. 본 민원은 속초시에도 동일 민원으로 접수되어 해당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임

나. 따라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안내’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조치결과

가. 속초시에서는 어촌계에서 운영·관리 중인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격 미달인 자가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나. 이에 따라 속초시는 어촌계에서 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을 명령함

다. 대포항 어촌계에서는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보조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속초시에 제출함

5. 결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속초시의 처리계획을 ‘심의안내’ 하고 향후 속초시의 처리결과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로 민원 신청할 것을 안내 하였음

• 피신청기관의 조치사항 확인 결과(참고)

속초시는 대포어촌계에 2020.10.19.에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보조금법 위반사항 시정명령」공문을 발송하여 '위반사항(자격 미달자가 판매행위를 하는 등)에 대한 즉각 운영 중단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대포어촌계는 보조사업 시설물 관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2020.10.30.에 해양수산과로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반사항 시정조치 결과(철거후 모습)



V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요구

- 신청인은 1962년 「개간촉진법」에 의거,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공유지(사유지 포함) 도암면 00리 산000번지 137,100평 중 일부를 자비를 들여 개간하였음
- 개간예정지로 고시되었던 산000번지 137,100평은 모두 농민이 개간한 것인데, 현재 남아있는 개간허가대장과 준공인가대장에는 개간예정지 전체 면적 중 일부에 대한 기록만이 남아 있음
- 기록이 없는 개간지 중에서 민원신청인이 노동과 자비를 들여 개간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길 원함

결정개요

1. 민원표시 : 제000호, 개간촉진법에 의해 개간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요구
2. 신청인 : 000 (강원도 평창군)
3. 피신청인 : 평창군
4. 결정사항 : 종결(반복 민원)
5. 결정일자 : 2020. 2. 17

이유

1.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은 1962년 「개간촉진법」에 의거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공유지(사유지 포함) 도암면 00리 산000번지 137,100평 중 일부를 자비를 들여(평당 9원) 개간하였음
 * 당시 해당 토지는 평당 1원이었으며 개간예정액은 평당 9원이었다고 함

나.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산000번지 137,100평은 모두 농민이 개간한 것인데, 현재 남아있는 개간허가대상과 준공인가대상에는 137,100평 전체에 대한 기록이 아닌 1966년 평창군수 정용덕 앞으로 개간 허가된 6,900평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음

다. 또한 평창군수는 신청인과 함께 농지를 개간한 농민들에게 평당1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1973년과 1978년 몇 백배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신청인에게는 이전해주시 않음

라. 기록이 없는 130,200평 중 약 5,000평은 신청인의 노동과 자비를 들여 개간한 농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길 원함

2. 피신청인 의견

가. 00리 산000번지 6,900평(1966년 평창군수가 허가 받음)은 개간촉진법 제2조에 의한 사유미간지로서 개간예정지외의 지역이며 1966년 당시 개간촉진법에는 사유지에 대해 타인이 개간을 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규정이 없어 균유지를 개인에게 분배해 주기 위해 개간허가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1967.1.16.제정된 농경지조성법 제16조(타인소유지의 개간후 분배)에서 새로이 정함

나. 또한, 민원인에게 개간허가지를 양도하였다는 ㅂ00뿐만 아니라 같이 개간을 하였다는 ㄱ00, ㄱ00 등이 '당시 개간은 개간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인 명지학원과 평창군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개간 후 임대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1985.4.8.과 2004.4.14.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다. 따라서 균유지를 무단개간 중 넘겨준 것으로서 민원인이 개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음

3. 소송현황

- 서울고등법원 : 국유토지 매수신청 거부처분 취소(1991. 7. 9)
- 판결 : 원고의 소를 각하(사건 90구0000)
- 이유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의 각 규정에 따라 국공유미간지 및 국공유개발농지를 매도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원고의 위 토지의 매수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피고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으로 소를 각하함

- 서울고등법원 : 농경지분배 확인거부 처분취소(1992. 12. 24)
 -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사건 92구0000)
 - 이유 : 개간농지에 대한 개간 수허가자가 실질적으로 원고인데 평창군수에게 그 명의만 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개간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그 개간 농지를 분배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각 판결함
- 대법원 : 농경지분배 확인거부 처분취소(1993. 5. 27)
 - 판결 : 상고 기각(사건 93누0000)
 - 이유 : 개간허가된 토지부분을 양도받은 것이라는 원고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개간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그 농경지를 분배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서울고등법원 : 농경지분배 확인거부 처분취소(2002. 12. 3)
 - 판결 : 재심의 소를 각하(사건 2002재누00)
 - 이유 :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 제기되었으므로 재심의 소가 부적합함
- 서울행정법원 : 농지개혁법등 준수 청구등(2009. 5. 6)
 - 판결 : 각하(사건 2008구합00000)
 - 이유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강원도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수허가자인 배○○으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제출의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 서울고등법원 : 농지개혁법등 준수 청구등(2009. 12. 2)
 - 판결 : 항소기각(사건 2009누00000)
 - 이유 : 1심 판결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음
- 대법원 : 농지개혁법등 준수 청구등 상고(2010. 4. 15)
 - 판결 : 상고기각(사건 2010두0000)
 - 이유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대한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개간농지 반환등 이행청구(2011. 7. 12)
 - 판결 : 청구기각
 - 이유 :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며 모두 각하함

4. 검토

가. 신청인이 평창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는, 평창군 00리 000-4(222평), 000-5(351평), 000-7(40평)번지로 총 613평이며, 이 토지는 산000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1966.10. 7. 평창군수가 6,900평에 대해 개간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됨(붙임2)

나. 1966년 개간허가대장에 예정지외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 결정신청을 하는 특별개간예정지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준공대장은 존재하지 않아 준공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 개간촉진법('62.2.22. 제정)



다. 1966년 당시 「개간촉진법」에는 고시된 개간예정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간을 허가하였으며,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간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내 착수 또는 준공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이를 매수 후 준공인가를 받은자에게 매도하였으며, 타인소유지의 토지를 개간할 경우 분배하는 규정은 없었음

라. 이후 1967년 「개간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농경지조성법」제16조(타인소유지의 개간후 분배)에서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타인소유지에 대해 개간허가를 받은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일정비율에 의해 개간으로 조성된 농경지를 분배한다고 규정함

• 농경지조성법(’67. 1.16. 제정)



마. 그러나 신청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토지는 1966년 개간허가신청을 하고, 같은해 12. 30이 준공 기일이었으므로 농경지조성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농경지조성법」 적용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신청인이 개간허가를 받아 준공하였다는 기록은 없음

바. 또한 신청인은 당시 5명이 개간을 하였으며, 그 중 ㅂ○○가 개간 허가 받은 것 중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2만원에 양도하여 신청인은 이에 따라 개간하였다고 주장하나, ㅂ○○명의로 개간 허가된 대장이나 ㅂ○○와 신청인간에 권리를 양도·양수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개간허가신청을 받은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개간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었음

사. 해당 민원은 신청인이 자비를 들여 농지를 개간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진정 민원(농림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을 신청하고 소송도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됨

5. 결론

-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고,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으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반복 민원 등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 함

현장 사진



000-4(전, 222평/ 개인소유)



000-5(전, 351평/ 평창군), 000-7(도로, 40평/ 건설부)

관련법령

개간촉진법

1962. 2. 22제정

제4조 (개간적지의 조사) ①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간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사토성 기타 개간지로서의 적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개간예정지의 결정)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적지의 조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개간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 개간예정지를 결정한다. 단, 개간적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유미간지일 경우에는 중앙개간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개간예정지의 고시) ①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2. 토지이용예정의 개요
3. 공사비개산액
4. 예정정보를
5. 토지대가예정액

제8조 (사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유미간지는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간을 허가한다.

제9조 (국유미간지의 개간허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국유미간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미간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농가당 2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한도내에서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단, 개간에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허가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세농가
2. 일반농가
3. 기타 영농의 능력이 있는 자

제10조 (개간허가의 절차)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①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개간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제12조 (개간준공 인가)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기일로부터 1월내에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신청서를 수리한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개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특별개간예정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이외의 미간지로서 일반개간예정지로 적합하지 않은 30정보이상의 1단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개간예정지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개간예정지로서의 적부를 결정하고 적지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사항은 고시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로서 결정고시된 토지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특별개간허가신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중 사유미간지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개간예정지결정신청자가, 국유미간지일 때에는 개간예정지결정신청자가 각각 전조의 고시일로부터 45일내에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개간예정지에 대하여 개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개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개간허가)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개간을 허가한다.

제24조 (타인소유토지의 매매)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한 1단지내에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의 소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

자는 이를 매도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간에 토지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매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가결정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토지상에 설정된 권리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타인토지대가의 지급) 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한 토지대가를 개간허가일로부터 2년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그 거주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초연도분의 토지대가를 지급 또는 공탁한 후가 아니면 개간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제26조 (국유지의 매도대가 및 상환)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한 1단지내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매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대가 및 상환에 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경지조성법

1967. 1. 16제정

제12조 (개간허가신청) 개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간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개간허가) ①허가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 및 자격과 능력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한 조건을 붙여 개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개간예정면적 및 용도
2. 개간의 착수 및 준공 기일
3. 토지매도예정가격(國有地에 限한다)
4. 공사비 예정액 및 보조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서울특별시·부산시 및 시의 행정구역안에 있어서의 허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개간허가의 순위) 허가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간예정지에 대하여 개간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서 토지소유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한 자
2. 이 법 시행당시 국공유미간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 계속 사용중인 자
3. 경작지가 5반보미만인 농가 및 정부계획에 의하여 정착하기로 된 농가
4. 기타 개간의 능력이 있는 자

제15조 (토지소유자의 간주) 다음에 계기한 자는 소유권등기미필중이라도 개간허가에 있어서는 이를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
2.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 또는 양여를 받은 자
3.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불하를 받은 자

제16조 (타인소유지의 개간후 분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예정지로 고시된 타인 소유토지에 대한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10분의 5 내지 7, 토지소유자가 10분의 3 내지 5의 비율에 의하여 개간으로 조성된 농경지를 분배한다.

②토지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받을 농지에 갈음하여 대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예정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뜻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개간허가의 조건으로 붙여야 하며,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개간준공인가일 이전에 토지소유자에게 그 대가를 일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토지의 위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에 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간위원회가 이를 재결한다.

⑤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재결서의 정보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급개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개간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중앙개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허가의 양도·상속·자격) ①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의 허가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개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③개간허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이를 상속할 수 있다.

제18조 (개간준공인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소정의 개간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05

참고자료

I 조례

II 시행규칙(별지 포함)

II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IV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총무행정관

(제정) 2012-08-03 조례 제 3573호

(전부개정) 2015-10-08 조례 제 3885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235호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4-13 조례 제 42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말한다.
3. “사회갈등”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3.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8.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3.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도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검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위원이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4.13.>
-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신설 2018.4.13.]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제1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73호,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85호, 2015.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 고 총처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60호, 201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소관부서 :총무행정관

(제정) 2012-10-12 규칙 제 2904호

(전부개정) 2013-01-18 규칙 제 2909호

(일부개정) 2015-11-13 규칙 제 3015호

(일부개정) 2017-09-29 규칙 제 3085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19-01-04 규칙 제 3127호

(일부개정) 2019-07-26 규칙 제 3141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신설, 2015.11.13]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신설, 2015.11.13]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신설, 2015.11.13]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신설, 2015.11.13]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신설, 2015.11.13]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회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5.11.13]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도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신설, 2015.11.13]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신설, 2015.11.13]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신설, 2015.11.13]

제3조(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신설, 2015.11.13]

1. 임기만료 및 결원 위원의 수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신설, 2015.11.13]
2. 결원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신설, 2015.11.13]
- ②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때에는 그 위원 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제2장 민원의 접수·조사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7.26.>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 ⑤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신청한 민원과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뢰받은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11.13.]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

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③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련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세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민원 접수일로 본다. [개정, 2015.11.13.]
- ③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10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개정, 2015.11.13.]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조사위원 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조사자나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여성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4.>
- ⑥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중지 등) ① 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11.13]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 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의 처리결과를 2회 이상 통지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신청한 때에는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4조(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합의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5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개정, 2015.11.13]
-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 관련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결과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제12조의 중지 등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11.13]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7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11.13]

-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18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 <개정 2015.11.13., 2019.1.4.>
 2. 제27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13.>
 6.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개정, 2015.11.13]
 5. 민원 접수·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개정, 2015.11.13]
 6.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개정, 2015.11.13]
 7. 위원회가 의결한 민원의 사후 처리결과[개정, 2015.11.13]
 8.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개정, 2015.11.13]
 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3]

-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5.11.13.>
- ④ <삭제, 2015.11.13.>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② 제1항의 경우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2019.1.4.>
-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참고인(공무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교통비·식비·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4.>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참고인 비용청구서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4.>

제23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11.13.]

-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서의 경정)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6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인과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통지 전에 관련기관의 장에

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1.4.>

- ③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 ①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③ 위원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11.13.]

- 1. 관계 서류의 제출
-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9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4장 사무국 운영

제30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개정, 2015.11.13]
-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개정, 2015.11.13]

5.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1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개정, 2015.11.13]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사무국장)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외부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와 사회갈등의 조정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사무국장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17.9.29., 2019.1.4.>

제32조의2(전문조사관 채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사회갈등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조사관으로 둘 수 있다.[신설, 2015.11.13]

1. 행정기관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15.11.13]
2. 변호사·건축사·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신설, 2015.11.13]
3. 갈등 조정 등과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5.11.13]
4. 그 밖에 갈등 조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5.11.13]

제33조(수당과 여비)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5.11.13.]

제34조(신분증명서)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별표]와 같다.

제36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 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3]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7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부 칙 <제2904호, 2012.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09호, 2013.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15호, 2015.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27호, 2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41호, 2019.7.26.>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3>

민원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①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전화	외명 (이동전화)
②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이동전화)
③ 피신청인	기관명 주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13>

민원접수증(제4조제5항 관련)				
접수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성명		주소	
대표자 (대리인)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p>위와 같이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margin-top: 100px;">20</p> <p style="margin-top: 20px;">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p> <p style="margin-top: 20px;">※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33-249-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p>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13>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4.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5.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6. 대리인의 자격		
<p>「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1. 민원번호”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p> <p>3.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p>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13>

대표자 선정 통지서(제5조제2항 관련)		
1. 민원번호		
2. 신청인	성명(명칭)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p>「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1. 민원번호”에는 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p>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1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10조제2항 관련)

수신

제목 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당초 처리기간	
연장사유			
처리에정기한			

2.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서 예상보다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에게(☎ 033-249-)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인

직원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www.0000.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13)

신분증명서(제11조제2항 관련)

(앞면)

60mm × 90mm

신 분 증 명 서

제 호

성 명 :

생년월일 :

3cm × 4cm

사 진

위 사람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직인)

(뒷면)

- ◎ 우리 도에서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우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 이 증을 제시하면 강원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도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용지 : 특급 190g/m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사무국장	조사위원
담당직원	

위원장

민원조사결과보고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	주소	
피신청인	○○○	접수일	20

1. 신청취지
2. 피신청인의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의견없음

위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관계법령, 복명서, 출석조사서 등 별첨
- ※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 도지사에게 별도 보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1.13>

의안대장(제20조제2항 관련)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 구분	의 안 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비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1.13)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의결(제23조제1항 관련)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가. 피신청인 통지용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붙임 의결서와 같이 귀 기관에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귀 기관에서는 위원회의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이유를 통보할 경우 다시 심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권고내용(의견내용)은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귀기관의 처리결과와 함께 공표되거나 매년 도지사과 도의회에 보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무관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www.0000.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나. 신청인 통지용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수신

제목 민원처리결과 통보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민원번호, 민원제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권고를(의견을) 통보받은 피신청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또는 처리계획)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만, 피신청인이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통보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결서 1부. 끝.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무관

서명

사무국장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접수일자)

우 20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www.0000.go.kr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5.11.13.)

사무국장	조사위원
담당직원	

위원장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제29조 관련)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청인	○○○	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			
검토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조치의견	<input type="checkbox"/> 감사의뢰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통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

- 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도·군·자치위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 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에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외뢰한 때에는 수사외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 1. 신분보장신청인
 -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 3. 참고인
 -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

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사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시행일 : 2022. 1. 13.] 제72조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제17806호, 2020.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담당관) 044-200-7057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3
 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식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 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 30.>

-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 10. 20.>
- 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0. 20.>
-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 10. 17., 2016. 9. 27., 2020. 12. 22.>

-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 30.>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삭제 <2019. 10. 15.>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

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

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연락처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관계 서류의 제출
 -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와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19. 10. 15.>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직접 이첩 받은”은 “송부 받은”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15.]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에서 같다)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68조(조치결과와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0. 15.>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6. 9. 27.]

[제목개정 2019. 10. 15.]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 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2020. 12. 31.>
-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④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 2. 출석 및 의견 진술
 -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증언자·고소인·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19. 10. 15.]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2. 29.>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4. 삭제 <2019. 10. 15.>
 -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28., 2015. 10. 20., 2019. 10. 15.>
- ③ 삭제 <2019. 10. 15.>

-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③ 삭제 <2019. 10. 15.>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

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 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제78조 중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7.]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보상금·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0.>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정본 및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10. 15.>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15.>

제83조 삭제 <2019. 10. 15.>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6.>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2. 22.]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 및 징계종류·징계사유·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 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제목개정 2016. 9. 27.]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0.>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조치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0. 17.]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15.>
[전문개정 2009. 5. 28.]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㉙까지 생략

2020 운영상황 보고서

[도민 권익보호 신뢰받는 강원도]

발행일 2021. 2. 15.
발행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도청 별관1층
전화 033-249-2301~3
홈페이지 www.gwombudsman.co.kr
디자인·제작 디자인마당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0 운영상황 보고서

도민 권익보호
신뢰받는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24266) 강원도청 별관 1층
E-mail. gwombudsman@korea.kr
Tel. 033 249 2301~3 Fax. 033 249 4133